

경상남도 성인지 예산제의 성과 향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기획행정위원회

<의안번호 제528호>

경상남도 성인지 예산제의 성과 향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발 의 일 자 : 2020. 2. 11.
- 발 의 자 : 김경영, 박우범, 김진기, 이옥선, 성낙인, 김영진, 박문철, 성연석, 신영욱, 예상원, 이정훈, 표병호, 김경수, 송순호, 원성일, 장규석, 김호대, 옥은숙, 이옥철, 김성갑, 김진옥, 류경완, 박준호, 이상열, 남택욱, 김윤철, 성동은, 손덕상, 송오성, 이상인, 이종호, 황보길, 김지수 의원(33명)
- 회 부 일 자 : 2020. 2. 11.
- 상정(의결)일자 : 2020. 6. 3.
(제374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2013 회계연도부터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도록 지방재정법을 개정하여 이래로 성인지예산 대상사업과 예산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왔으나, 제도의 실효성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 성인지 예산제가 성차별을 개선하고 성평등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도록 그 성과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성인지 예산제의 성과 향상을 위한 운영 원칙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2) 성인지 예산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3) 성인지 예산제 실무 지식 함양을 위한 지침서 마련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4)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분석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5) 성인지예산협의체 설치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제15조)
- 6) 성인지 예산 및 성인지 결산에 대한 도민 참여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 7) 도민 모니터링단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7조)
- 8) 성인지 예산제 추진성과 공개에 관한 사항(안 제18조)
- 9) 성인지 예산제 공로자에게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19조)

다. 참고사항

- 1) 관련법규 :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기본법」
- 2) 소요예산 :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첨부
- 3) 기 타
 - 가) 입법예고 : 2020. 1. 22 ~ 2020. 1. 31, 제출의견 없음
 - 나)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 심의 대상 아님
 - 다) 규제심사 : 의견없음
 - 라)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마)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없음
 - 바) 지역인재고용영향평가 : 의견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가. 검토내용

□ 제정이유

-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본 조례안은 본칙 총 20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칙의 주요내용으로는 목적(안 제1조),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분석 등(안 제7조), 성인지예산협의체와 실무협의체의 구성·운영(안 제8조 ~ 안 제15조), 도민 모니터링단 운영(안 제17조) 등을 규정하고, 부칙에는 본 조례 시행일을 규정하였음.
- **안 제1조(목적)**에서는 조례의 목적에 대해 규정함
 - 조례의 목적에서 “성평등”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조례의 용어는 상위법령의 용어를 따르는 것이 원칙이므로, 법률 용어인 “양성평등”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안 제3조(도지사의 책무)**에서는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
- **안 제7조(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분석 등)**에서는 성인지 예산에 대한 분석을 통해 성과를 확인하고 보완하도록 함.
 - 지방회계법 제18조*에 따라 회계과에서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음.

* 지방회계법 제18조(성인지결산서의 작성·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혜택을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성인지 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 안 제8조~안 제15조에서는 성인지 예산의 성과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해 성인지예산협의체와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음
- 안 제17조(도민 모니터링단 운영)에서는 도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도민 모니터링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음

나. 검토의견

- 성인지 예산제도는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서, 지방재정법이 2011년 개정·공포되었으며 우리 도는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음.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지역별 성평등 수준을 분석 연구한 결과 우리 도의 성평등 지수는 16개 시·도 중 13위로 성평등 하위지역에 속해 있으며, 성평등한 사회참여와 여성의 인권·복지영역은 하위권, 성평등 의식·문화영역에서 상위권에 위치함
- 양성평등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성인지 예산은 지역성평등지표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 제정 조례안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 「양성평등기본법」 제16조(성인지 예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성인지(性認知) 예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성인지 예산에 필요한 기준제시, 자문 및 교육훈련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성평등지표 및 지역성평등지표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

- 올해 우리 도의 성인지 예산은 155건 16,539억원으로 전년 대비 14.1% 증가하여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음.

※ 2019년 성인지 예산 현황

회계별		사업 개수	2020년 예산액	2019년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계		155	1,653,963	1,449,552	204,412	14.1%
양성 평등 정책 추진 사업	소계	46	1,470,131	1,223,052	247,079	20.2%
	일반회계	46	1,470,131	1,223,052	247,079	20.2%
	기타특별회계	0	0	0	0	0
	기금	0	0	0	0	0
성별 영향 평가 사업	소계	100	174,364	214,064	△39,700	18.55%
	일반회계	84	173,781	206,457	△32,676	15.83%
	기타특별회계	16	583	7,607	△7,024	92.33%
	기금	0	0	0	0	0
자치 단체 특화 사업	소계	9	9,469	12,436	△2,967	23.86%
	일반회계	9	9,469	12,436	△2,967	23.86%
	기타특별회계	0	0	0	0	0
	기금	0	0	0	0	0

- 그러나 의회와 결산검사 등에서, 성인지 대상 사업 분류 부적절, 일부 기능 및 조직에의 편중, 성과목표 부적정, 예산집행률 위주의 효과 분석 등 문제점들이 지적되어 왔음

※ 2018년 기준 도의 성인지 예산 규모는 도 예산현액의 14.3%를 차지하며, 사회복지 분야가 95.06%(복지보건국 76%, 여성가족정책관 15% 등)로 편중을 보이고 있음.

- 성인지 예산은 대상사업의 선정이 중요하며,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2020년도 성인지예산서 종합분석 연구'에서도 제도의 본래 목적달성 여부는 대상사업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

- 성인지 예산은 예산담당관실과 여성정책과, 회계과가 역할을 맡아 추진하고 있음



○ 조례안에서는 성인지 예산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해 경상남도 성인지예산협의체를 설치하도록 하고 필요 시 실무협의체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반영하도록 규정하여 성인지 예산제도와 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 「성별영향평가법」 제9조(성별영향평가결과의 반영)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국가재정법」 및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 조례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는 특정평가 대상사업의 선정, 분석평가 및 특정평가 결과 반영, 정책개선 권고 등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있음.

-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예산은 분리하기 어려우며*, 협의체와 위원회의 구성원과 역할에서 유사성도 있어 보인다는 의견도 있어 기존의 위원회를 활용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겠음.

*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 필수(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추진사업, **성별영향평가사업**), 권장(자치단체가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

성인지예산협의체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거 : 경상남도 성인지 예산제의 성과 향상 조례안 ▶ 구성 : 30명 이내(예산담당관, 회계과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거 : 경상남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 구성 : 13명(당연직 3, 위촉직 10) - 당연직(3명) : 여성가족청년국장(부위원장),

성인지예산협의체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여성가족정책관 성별영향평가센터장 등 ▶ 임기 : 2년(1회에 한해 연임가능) ▶ 기능 - 성인지 예산서 운영계획 수립·보완 - 성인지 예산제 운영성과의 분석 등 - 그 밖에 성인지 예산 향상에 필요한 사항 ▶ 회의개최 : 정기회의 연 2회 ※ 필요 시 실무협의체를 둘 수 있음	성별영향평가센터장, 예산담당관 ▶ 임기 : 2년(1회에 한해 연임가능) ▶ 기능 - 특정평가 대상사업 선정 및 분석평가 추진실적 심의 - 평가 결과 반영 및 정책개선 권고 ▶ 회의개최 : 정기회의 연 1회

- 또한, 조례안의 경우 시·군 예산부서 장이 포함되어 있고 위원장이 실무협의체로 하여금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조사·연구·심의하여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필요 시 협조를 통해 관계기관,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공 등을 요청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으로 검토가 필요함.

○ 향후 성인지협의체 운영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성인지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제도의 보완과 함께 공무원의 역량강화와 성인지 대상사업의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정부차원의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기획재정부와 여성가족부가 직접목적 사업과 간접목적 사업이라는 대상사업 선정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2020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 매뉴얼」을 보더라도 주로 개념과 예시를 들고 있을 뿐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담당자의 주관적 판단 등으로 인해 대상사업 선정의 일관성과 체계성이 부족한 면이 있으며, 국회와 언론 등의 지적을 많이 받고 있음(「2020년도 예산안 성인지 예산서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 타 시·도의 동향을 파악한 결과 광주(2017. 11. 23.)와 충북(2019. 3. 7.), 전남(2019. 5. 15.), 제주(2019. 7. 11.)에서 제정되었으며, 경기도, 전북, 경북에서는 2019년에 회부되었으나 동성에 옹호 및 성 소수자 예산 지원 논란 등으로 무기한 보류되고 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가. 박문철 위원 수정안 발의

○ 수정이유

- 용어를 상위법령과 일치시키고, 강행규정과 협의체 구성, 실무협의체, 포상규정 등의 내용을 형평성과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업무의 위탁 조항을 신설하여 조례의 목적성을 강화하고자 함.

○ 수정내용

- 안 제1조 중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한다.
- 안 제6조제3항 중 “심의를”을 “자문을”로 한다.
- 안 제7조 중 “반영해야 한다.”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한다.
- 안 제9조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제5호로 한다.
- 안 제10조제1항 중 “30명”을 “2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11호를 제6호로 한다.
- 안 제15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중전의 제3항) 중 “심의를”을 “자문을”로 한다.
- 안 제16조 중 “반영해야”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로 한다.
- 안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조(업무의 위탁 등) ① 도지사는 성인지예산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제6조, 제7조에 규정된 업무 및 도민 모니터링단 운영을 전문성이 있는 산하기관 또는 민간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안 제19조를 삭제하고, 제20조를 제19조로 한다.

6. 심사결과 : 수정안가결(재석위원 전원 찬성)

○ 재적위원 : 10명, 재석위원 : 6명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첨부서류 : 1. 경상남도 성인지 예산제의 성과 향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2. 경상남도 성인지 예산제의 성과 향상 조례안(수정안 포함)

경상남도 성인지 예산제의 성과 향상 조례안

의안 번호	제528호 관련
----------	----------

제안연월일: 2020. 6. 3.

제안자: 박문철

1. 수정이유

- 용어를 상위법령과 일치시키고, 강행규정과 협의체 구성, 실무협의체, 포상규정 등의 내용을 형평성과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업무의 위탁 조항을 신설하여 조례의 목적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수정 주요내용

- 안 제1조 중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한다.
- 안 제6조제3항 중 “심의를”을 “자문을”로 한다.
- 안 제7조 중 “반영해야 한다”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한다.
- 안 제9조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제5호로 한다.
- 안 제10조제1항 중 “30명”을 “2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11호를 제6호로 한다.
- 안 제15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중전의 제3항) 중 “심의를”을 “자문을”로 한다.
- 안 제16조 중 “반영해야”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로 한다.
- 안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7조(업무의 위탁 등) ① 도지사는 성인지 예산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제6조, 제7조에 규정된 업무 및 도민 모니터링단 운영을 전문성이 있는 산하기관 또는 민간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안 제19조를 삭제하고, 제20조를 제19조로 한다.

경상남도 성인지 예산제의 성과 향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경상남도 성인지 예산제의 성과 향상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조 중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한다.

안 제6조제3항 중 “심의를”을 “자문을”로 한다.

안 제7조 중 “반영해야 한다.”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한다.

안 제9조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제5호로 한다.

안 제10조제1항 중 “30명”을 “2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11호를 제6호로 한다. 제15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3항) 중 “심의를”을 “자문을”로 한다.

안 제16조 중 “반영해야”를 “반영하도록 노력 하여야”로 한다.

안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업무의 위탁 등) ① 도지사는 성인지 예산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제6조, 제7조에 규정된 업무 및 도민 모니터링단 운영을 전문성이 있는 산하기관 또는 민간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안 제19조를 삭제하고, 제20조를 제19조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제가 성차별을 개선하고 <u>성평등을 증진</u>하는 데 이바지하도록 그 성과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 ----- <u>양성평등</u> ----- ----- ----- -----.</p>
<p>제6조(지침서 등) ①·② (생략)</p> <p>③ 도지사는 지침서의 활용도 및 정책의 변경 사항 반영 여부 등을 점검하고, 제8조에 따른 경상남도 성인지예산협의체의 <u>심의를</u> 거쳐 매년 지침서를 보완해야 한다.</p>	<p>제6조(지침서 등)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 <u>자문을</u> ----- -----.</p>
<p>제7조(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분석 등) 도지사는 매년 성인지 예산서와 성인지 결산서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해 재정사업의 <u>성평등 성과를</u> 확인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성인지 예산서와 성인지 결산서 작성에 <u>반영해야</u> 한다.</p>	<p>제7조(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분석 등) ----- ----- ----- ----- ----- ----- ----- ----- <u>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u> 한다</p>

제9조(기능)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 1. ~ 4. (생략)
- 5. 제19조에 따른 포상 대상자 추천
- 6. (생략)

제10조(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생략)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 1.·2. (생략)
- 3. 도내 시·군의 성인지 예산 업무 담당부서의 장

- 4. ~ 6. (생략)

- 7. 「경상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27조에 따른 경상남도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 8. 「경상남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제8조에 따른 경상남도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서

제9조(기능) -----
-----.

- 1. ~ 4. (현행과 같음)
- <삭제>

- 5. (현행 제6호와 같음)

제10조(구성) ① -----
----- 20
명 -----.

- ② (현행과 같음)
- ③ -----
-----.

- 1.·2. (현행과 같음)
- <삭제>

- 3. ~ 5. (현행 제4호부터 제6호까지와 같음)

- <삭제>

- <삭제>

추천하는 사람

9.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삭 제>

10. 성인지 예산제 관련 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삭 제>

11. (생략)

6. (현행 제11호와 같음)

제15조(실무협의체) ① (생략)

제15조(실무협의체) ① (현행과 같음)

② 실무협의체는 협의체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조사·연구·심의하여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삭 제>

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② -----

----- 자문을
-----.

제16조(도민 참여) 경상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은 성인지 예산 및 성인지 결산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그 의견을 수렴하여 성인지 예산제 운영에 반영해야 한다.

제16조(도민 참여) -----

-----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
--.

제17조(도민 모니터링단 운영) ①

제17조(업무의 위탁 등) ① 도지

도지사는 도민의 실질적인 참여를 위하여 성인지 예산에 대한 도민 모니터링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도민 모니터링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민 모니터링단에 민간 전문가를 둘 수 있다.

제19조(포상) 도지사는 성인지 예산제 성과 향상에 큰 공적이 있는 개인, 기관·단체 및 공무원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20조 (생략)

사는 성인지 예산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제6조, 제7조에 규정된 업무 및 도민 모니터링단 운영을 전문성이 있는 산하기관 또는 민간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삭 제>

제19조 (현행 제20조와 같음)

경상남도 성인지 예산제의 성과 향상 조례안

(수정안 포함)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제가 성차별을 개선하고 양성평등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도록 그 성과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인지 예산제”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집행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성인지 예산서”란 「지방재정법」 제36조의2에 따른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말한다.
3. “성인지 결산서”란 「지방회계법」 제18조에 따른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혜택을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4. “성인지감수성”이란 정책을 수행할 때 성별 역할과 지위에 있어 사회적 관행과 역학관계를 이해하고 성별입장과 경험을 고려하여 성차별적인 영향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통찰력·기술·지식 등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부서간 협력

체계 활성화, 공무원 교육훈련, 재정사업의 전 과정에 성인지 관점이 통합되는 관리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성인지 예산제를 통한 지역 성평등 수준 및 성과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운영 원칙) 도지사는 성인지 예산제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성인지 예산제를 운영해야 한다.

1.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의 성평등 목표는 성별 생애주기 특성을 고려하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중장기 차원에서 수립할 것
2.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의 선정은 성평등 목표에 부합할 것

제5조(운영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성인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관계부서 협의를 바탕으로 성인지 예산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운영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성인지 예산의 성평등 목표 및 편성방향
2. 성인지 예산제에 대한 주민참여 및 홍보
3. 성인지 예산제에 대한 공무원, 관련자에 대한 교육계획
4. 전전년도 성인지 예산 집행실적 등 분석·평가
5. 그 밖에 성인지 예산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지침서 등) ① 도지사는 공무원의 성인지감수성 향상, 성인지 예산제에 대한 이해 증진,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작성·활용 등 실무 지식 함양을 위한 지침서를 마련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성별영향평가 결과 등과 연계하여 성

인지 예산제가 운영되도록 지침서를 작성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지침서의 활용도 및 정책의 변경 사항 반영 여부 등을 점검하고, 제8조에 따른 경상남도 성인지예산협의체의 자문을 거쳐 매년 지침서를 보완해야 한다.

제7조(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분석 등) 도지사는 매년 성인지 예산서와 성인지 결산서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해 재정사업의 성평등 성과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성인지 예산서와 성인지 결산서 작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성인지예산협의체 설치) 도지사는 성인지 예산제의 성과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성인지예산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제9조(기능)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운영계획의 수립 및 보완
2. 제6조에 따른 지침서
3. 제7조에 따른 전년도 성인지예산제 운영성과의 분석·평가·환류
4. 제16조에 따른 도민의견 수렴방안
5. 그 밖에 성인지 예산제 성과 향상에 필요한 사항

제10조(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작성 업무 담당부서의 장
2. 성평등 업무 담당부서의 장
3. 경상남도 성별영향평가센터장
4. 경상남도의회 의원
5. 성인지 예산제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 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간사)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성인지 예산 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15조(실무협의체) ① 협의체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또는 소관 부서별 실무협의체를 둘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자문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도민 참여) 경상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은 성인지 예산 및 성인지 결산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그 의견을 수렴하여 성인지 예산제 운영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업무의 위탁 등) ① 도지사는 성인지 예산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제6조, 제7조에 규정된 업무 및 도민 모니터링단 운영을 전문성이 있는 산하기관 또는 민간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추진성과 공개) 도지사는 성인지 예산제 운영의 투명성 강화와 성과 향상을 위하여 도민들이 알기 쉬운 방법으로 홈페이지에 성인지 예산사업의 성평등 성과를 공개해야 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 성인지 예산제의 성과 향상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재정 수반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경상남도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안은 성인지 예산제가 성차별을 개선하고 성평등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도록 그 성과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 소요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예상되므로 비용추계의 필요성이 없음

4. 작성자 :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박 기 병